

[별지 제44호서식]<개정 1987.12.11>

보 관 증 (제55조제1항 관련)

보 관 증					
소유자 또는 점 유 자	① 성 명				
	② 주 소				
③ 기 물 명	④ 품질구조	⑤ 규 격	⑥ 기 물 번 호	⑦ 수 량	⑧ 비 고
위 계량기는 검사결과 부정계량기이므로 계량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가 있을 때까지 보관함.					
년 월 일					
공업진흥청					
계량검사 공무원 성명 (인)					
시 · 도					

4203-33A

190mm×268mm

1981.3.30 승인

(신문용지 54g/m²)